

전주지방법원 2022. 10. 26 선고 2021나113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김학수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10. 26.

제1 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21가소14591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2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10. 14.경 피고와의 사이에 공사대금 118,200,000원, 착공일 2019. 6. 20., 준공일 2020. 5. 8.로 정하여 'C역사 외 변전건물 신축 기타공사 기계설비공사 중에 냉난방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1. 12.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주계약명 '이 사건 공사', 보험기간 2019. 10. 14.부터 2020. 6. 22.까지(253일간), 보험가입금액 80,0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9. 12. 16. 45,000,000원, 2020. 1. 21. 24,000,000원, 2020. 4. 29. 10,000,000원 합계 89,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D 주식회사로부터 나머지 공사대금 29,200,000원(= 118,200,000원 - 89,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 제외) 실외기 5대 중 4대(920,000원, 부가세 별도), 냉난방기용 Y분기관(대) 30개 중 29개(2,842,000원, 부가세 별도), 전기히트펌프 받침대 8개 중 2개(260,000원, 부가세 별도)를 각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200,000원 전부의 지급을 구하다가, 원고가 피고의 미시공을 이유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D 주식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이를 모두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4,424,200원{= 4,022,000원(= 920,000원 + 2,842,000원 + 260,000원) × 1.1(부가세)}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미시공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가 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 제외) 실외기 5대 중 1대와 증가된 전기히트펌프 받침대 3대 중 1대만을 설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현재 이 사건 공사현장인 C역사에는 적어도 냉난방기설치기본(냉매배관 제외) 실외기 5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개의 전기히트 펌프 받침대가 설치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냉난방기용 Y분기관(대) 30개 중 1개만을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영상 내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냉난방기용 Y분기관(대)은 실외기 본체 배관에서 냉난방기로 냉매를 공급 및 분배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냉난방기용 Y분기관(대)가 설치되지 않았을 경우 냉난방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가 고용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E은 2020. 6. 3. 피고가 설치한 장비들이 이상 없이 설치되었고, 위 장비들을 정상적으로 시운전하였음을 확인하고, 시운전확인서에 서명날인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적어도 5개의 냉난방기용 Y분기관(대)이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냉난방기용 Y분기관(대) 30개를 모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③ 현재 C역사 외 변전건물의 냉난방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미시공 부분을 원고가 직접 또는 다른 업체를 통하여 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④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0. 6. 9.경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 미시공으로 기재되어 있는 시공내역서를 메일로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시공내역서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최종적인 공사내역서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원고는 2019. 6. 20. F이라는 업체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취소하고, 2019. 10. 14. 피고와 공사대금 118,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미시공 부분은 피고가 하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극히 일부(118,200,000원 중 4,424,200원)에 해당하고, 그 공사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위 미시공 부분에 관한 공사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대부분 완성한 상태였는데, 원고가 사전에 원청과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를 하지 못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일부 공사를 미시공한 것으로 기재하여 감액된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중 미시공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아닌 D 주식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의 미시공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2022. 9. 5.자 참고서면을 통하여 D 주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인하면서 피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잔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보증서 발급지연, 법적조치 비용, 보증수수료 증가, 보증한도 감소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이어서 원고가 피고의 미시공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미리, 판사 김범준, 판사 신태광